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 제도 개요

- **(목적)** 해상풍력 사업자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입지 적정성 파악에 기여
 -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심의 전 전기위원회로 컨설팅 결과* 제출
- * (신설)입지지도 컨설팅 결과서 또는 (기존)해양입지컨설팅 결과서 중 사업자 선택 가능
- **(대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입지적정성 검토 또는 발전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 * 풍향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근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상 해상풍력 사업예정부지의 환경성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구축·운영
 -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 [별표1] 3.사업이행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 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 운영 절차

- ① **(신청자 → 풍력지원반)**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등록 후 신청
- ② **(풍력지원반)**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검토* 완료
 - * 해상교통 안전진단 항목의 경우, 전문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 후 회신
- ③ **(풍력지원반 → 신청자)**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 최종 컨설팅 결과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신*
 - ⇒ 신청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활용
 - * 14일 이내 회신 원칙이나, 관계기관 검토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지연될 수 있음

□ 검토 항목

구분	검토항목	비고	구분	검토항목	비고
1	계측기 유효지역	입지적합성 분야	40	파고부이	해양환경 분야
2	발전단지 유효지역		41	관광단지	
3	풍력발전기 위치		42	수산자원관리수면	어업활동 분야
4	해안선	43	수산자원보호구역		
5	취수해역	44	어장(마을, 정치망)		
6	도시자연공원구역	45	양식장		
7	등록문화재구역	46	국가어항		
8	지정문화재구역	47	지방어항		
9	문화재보호구역	48	어촌정주어항		
10	국립자연공원	49	소규모어항		
11	군립자연공원	50	마을공동어항		
12	도립자연공원	51	바다목장	항만항행 분야	
13	생태경관보전지역	52	도선사승하선구역		
14	세계유산지정구역(갯벌)	53	신항만예정지역		
15	습지보호지역	54	정박지구역		
16	습지주변관리지역	55	항로표지설치해역		
17	습지개선지역	56	항만구역		
18	자연환경보전지역	57	항만배후단지		
19	절대보전무인도서	58	보호수역		
20	준보전무인도서	59	무역항		
21	특정도서	60	연안항		
22	천연보호구역	61	일반항로		
23	습지보호지역(갯벌)	62	지정항로		
24	해양생태계보호구역	63	양길항로		
25	보호수면	64	깊은수심항로		
26	해중경관지구	65	요트주요항로		
27	해양환경보전해역	66	마리나항정보		
28	특별관리해역	67	유조선통항금지해역		
29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68	선박안전교통관제구역		
30	야생생물보호구역	69	교통안전특정해역		
31	연안침식관리구역	70	해상교통안전진단		
32	해저수송관	71	비행금지구역(P)	군사 분야	
33	해저케이블	72	비행제한구역(R)		
34	산업폐기물투기구역	73	비행위험구역(D)		
35	영해한계선	74	민간항공훈련구역(CATA)		
36	한중잠정조치수역	75	비행경계공역(A)		
37	한중과도수역	76	군작전구역(MOA)		
38	한일중간수역	77	헬리콥터훈련구역(HTA)		
39	광구	78	해경훈련구역		기타

* 관계기관 레이어 제공 등에 따라 항목 변동 가능

□ 기본방향

- ❶ 발전사업허가 심의 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❷ '해상풍력 입지 지도' 기반으로 컨설팅 제공
 - * 해상풍력 개발 적정입지 검토를 위한 공간정보 약 80여개 구축
 - ** 해상교통의 경우, 관련 전문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 진행
- ❸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을 컨설팅 창구로 운영

참고1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신청화면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등록
✕

○ 신청자 정보

사업명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사업자명
대표자명 *	대표 전화번호 *	주최권(인)을 해당하고 입찰해주실까요?	
담당자 휴대번호 *	담당자 이메일 *	www@domain.com	

○ 사업 정보

발전소 주소 *

시도 서울 | 시군구 서대문구 | 읍면동 신촌동 | 리 리

발전사업단계 *

계속기 설치 전

터빈사양(MW * 기) *

터빈사양(MW)	MW	기	설비용량(MW)	MW
----------	----	---	----------	----

면적(m²) *

면적(m ²)	m ²
---------------------	----------------

발전기 높이(m) *

발전기 높이(m)	m
-----------	---

총사업비(억원) *

총사업비(억원)	억원
----------	----

자기자본(%) *

자기자본(%)	%
---------	---

● 계속기 및 발전단지, 발전기 좌표의 정보는 사업계획 기술서의 동일한 순번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역설양식 다운로드
역설 업로드
신청구역 지도

번호	발전단지 좌표(경위도)	+
N	E	+
발전단지 정보가 없습니다.		

발전소 위치 및 세공정보 *

번호	좌표	내용	+
발전기 좌표 정보가 없습니다.			
발전기 좌표 알을 설정 선택			
번호	발전기 좌표(경위도)	발전기 좌표	+
N	E	E	+
발전기 정보가 없습니다.			

● 계속기 유효지역 기준 : 계속기틀 포함된 정사각형의 도형으로(면, POLYGON) 면적은 최대 100㎡ 이하이며, 한 변의 길이는 최대 10km 이하 여야 합니다.

신청구역 지도

계속기 위치 및 유효지역 *

번호	계속기 좌표(경위도)	계속기 종류	계속기 허가원	계속기 설치일	계속기 허가기권	+
N	E					+
계속기 정보가 없습니다.						

사업 목적 *

사업의 종류 *

고정식 부유식

사업주진 상황 *

날짜	내용	+
사업주진 상황 정보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 구매 세팅

파일 업로드

기타

영시 저장
컨설팅 신청
취소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

○ 작성자 정보

작성자			
작성부서		팀	
제목			

○ 사업개요

사업명		용량	MW
신청단계	계측기 설치 전() 발전사업허가 전()		
사업자 구분			
사업자명			
부지위치			

○ 분석결과

<input type="checkbox"/> 입지적합성분야	4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기 유효지역 ○ 발전단지 유효지역 ○ 풍력발전기 위치 ○ 해안선 	
<input type="checkbox"/> 해양환경분야	37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수해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등록문화재구역 ○ 지정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국립자연공원 ○ 군립자연공원 ○ 도립자연공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 세계유산지정구역(갯벌)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습지개선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절대보전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특정도서
- 천연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갯벌)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보호수면
- 해중경관지구
- 해양환경보전해역
- 특별관리해역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 연안침식관리구역
- 해저수송관
- 해저케이블
- 산업폐기물투기구역
- 영해한계선
- 한중잠정조치수역
- 한중과도수역
- 한일중간수역
- 광구
- 파고부이
- 관광단지

어업활동분야

10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 수산자원관리수면
- 수산자원보호구역
- 어장(마을, 정치망)
- 양식장
- 국가어항
- 지방어항
- 어촌정주어항
- 소규모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어항 ○ 바다목장 	
<input type="checkbox"/> 항만항행분야	19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승하선구역 ○ 신항만예정지역 ○ 정박지구역 ○ 항로표지설치해역 ○ 항만구역 ○ 항만배후단지 ○ 보호수역 ○ 무역항 ○ 연안항 ○ 일반항로 ○ 지정항로 ○ 양길항로 ○ 깊은수심항로 ○ 요트주요항로 ○ 마리나항정보 ○ 유조선통항금지해역 ○ 선박안전교통관제구역 ○ 교통안전특정해역 ○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의견서 붙임 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분야	1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 훈련구역 	
<input type="checkbox"/> 군사분야	7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금지구역(P) ○ 비행제한구역(R) ○ 비행위험구역(D) ○ 민간항공훈련구역(CATA) ○ 비행경계구역(A) ○ 군작전구역(MOA) ○ 헬리콥터훈련구역(HTA) 	

○ 검토의견

<input type="checkbox"/> 입지적합성분야
○
<input type="checkbox"/> 해양환경분야
○
<input type="checkbox"/> 어업활동분야
○
<input type="checkbox"/> 항만항행분야
○
○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의견서[해양교통안전공단] 붙임 참고
<input type="checkbox"/> 기타분야
○
<input type="checkbox"/> 군사분야
○

○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입지 신중 검토지역(환경부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
<input type="checkbox"/> 입지 회피 검토지역(환경부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
<input type="checkbox"/> 중점검토가 요구되는 해양환경보호지역 또는 규제지역(해수부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input type="checkbox"/> 군사분야
○
<input type="checkbox"/> 주변 풍력발전사업단지(발전사업허가 신청 기준)
○
<input type="checkbox"/> 종합의견
○

풍 력 발 전 합 동 지 원 반

년 월 일

담당: ☎

본 컨설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지적합성, 해양환경, 어업활동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발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검토의견은 행정상 확정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검토 결과 입지가 적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기관(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부처(국방부·해수부·환경부)를 통한 입지 검토를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입지컨설팅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제공해드리는 주변 발전사업허가 해상풍력 단지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입지지도 상세 및 분석결과)

전체

전체 77개 항목 중 개 항목 해당

1.

○ 검토항목

번호	분야	레이어명	주관	관련 근거 및 설명	비고
1	입지 적합성	계측기 유효지역	산업부	(신청구역 정보)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	
2		발전단지 유효지역	산업부	(신청구역 정보)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	
3		풍력발전기 위치	산업부	(신청구역 정보)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	
4		해안선	해수부	(신청구역 정보)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 영업무에 관한 고시	
5	해양 환경	취수해역	해수부	「해양심층수법」 제3조, 해양 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알맞은 해저 지형 및 수질 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6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3.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7		등록문화재구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4항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 1.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 2.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8		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3항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9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5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해수부 규정
10		국립자연공원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11		군립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12		도립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13		생태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해수부 규정
14		세계유산지정구역(갯벌)	환경부, 해수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환경부 지침
15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해수부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16	습지주변관리지역			해수부 규정	
17	습지개선지역			해수부 규정	
18	해양 환경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부	자연환경수자원·해양·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해수부 규정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도시(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군관리계획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결정·고시한 지역	
19		절대보전무인도서	해수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항제1호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환경부 지침
20	준보전무인도서				
21		특정도서	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 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 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2		천연보호구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제3호다목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환경부 지침
23		습지보호지역(갯벌)	환경부, 해수부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4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수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에 의거한 해양생태계 보호 구역 공간 자료로서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5		보호수면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6		해중경관지구	해수부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해양관광의 진흥)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고시	해수부 규정
27		해양환경보전해역	해수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8		특별관리해역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한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한 위치정보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29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법」 제27조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	해수부 규정
30		야생생물보호구역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장, 군수, 구청장이 「야생생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구역	
31	해양 환경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수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32		해저수송관	산업부	액체, 슬러리, 기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연결된 파이프로 전자해도기반 해저수송관 해양객체 선형정보(설명출처 개방해)	
33		해저케이블	산업부	해저에 놓여 있거나 해저 아래에 묻혀 있는 와이어나 섬유의 집합체, 또는 하나의 와이어나 체인을 뜻하며 전자해도기반 해저케이블 해양객체 선형정보(설명출처 개방해)	
34		산업폐기물투기구역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70조, 제76조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설정 폐기물 해양투기구역을 법률로 규정	
35		영해한계선	해수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영해한계선정보(설명출처 개방해)	
36		한중잠정조치수역	해수부	한·중 어업협정 제7조에 의거한 한중잠정조치수역 정보,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설정된 수역(설명출처 개방해)	
37		한중과도수역	해수부	한·중 어업협정 제8조에 의거한 한중과도수역 정보, 황해상 중간지점에 설정된 잠정조치수역과 해당국 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사이에 설치된 수역으로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된 수역(설명출처 개방해)	
38		한일중간수역	해수부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한일중간수역 정보, 1999년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제계획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수역으로 즉,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보존 및 관리하는 수역(설명출처 개방해)	
39		광구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0		파고부이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11항, 제31조3항에 따라 수로조사 시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파도의 높이를 관측하는 부이(buoy, 물에 띄워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설명출처 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	
41		관광단지	문체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	
42	어업 활동	수산자원관리수면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43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4항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환경부 지침, 해수부 규정
44		어장정보(마을, 정치망)	해수부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45		양식장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6		국가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3항제가호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47	어업 활동	지방어항	해수부	「어촌어항법」 제2조3항제나호에 따른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48		어촌정주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3항제다호에 따른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49		소규모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3항제라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50		마을공동어항		「어촌어항법」 제2조3항제라호에 따른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51		바다목장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52	항만 항행	도선사승하선구역	해수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른 도선사가 항행준비를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연안 내 장소로 전자해도 기반 도선사승하선구역 해양객체 점형정보(설명출처 개방해)	
53		신항만예정지역	해수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설명출처 개방해)	
54		정박지구역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55		항로표지설치해역	해수부	「항로표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56		항만구역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7		항만배후단지	해수부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 또는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8		보호수역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법」 제5조(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술지 주변에 보호수역이 지정	
59		무역항	해수부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60		연안항	해수부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61		일반항로	해수부	대형 선박이 주로 항행하는 수로가 있는 강, 항만 등의 일부. 또한 항로는 선박이 항을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상적인 코스로 "선박 채널(벧길)"이라고도 함.(설명출처 개방해)	
62		지정항로	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10조1항에 따라 입출항 선박 및 그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의 항로 지정하(설명출처 개방해)	
63		양길항로	해수부	제한된 경계 내부의 항해에 위험하거나 어려운 수역에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양방향 교통이 설치된 항로(설명출처 개방해)	
64		깊은수심항로	해수부	지정된 경계내 명시된 지역의 항로로서 경계 내는 정밀 측량을 하고 해저 장애물의 최소 수심의 표시된 최소 여유 수심을 확보(설명출처 개방해)	
65	항만 항행	요트주요항로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발간되는 전국요트일주도의 주요항로 정보(설명출처 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	
66		마리나항정보	해수부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설명출처 해양수산빅데이터플랫폼)	
67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수부	「해사안전법」제14조에 따라 연안유조선의 수송물동량 증가로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연안수산업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유지로 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운항토록 하는 범위	
68		선박안전교통관제구역	해양 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69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수부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해수부 규정
70		해상교통 안전진단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71	기타	해경 훈련구역	해양 경찰청	2015년에 제작 된 한국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도의 해양경찰청 훈련구역에 대한 위치정보(설명출처 개방해)	
72	군사	비행금지구역(P)	국방부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rohibited Area	
73		비행제한구역(R)	국방부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Restricted Area	
74		비행위험구역(D)	국방부	항공기가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Danger Area	
75		민간항공훈련구역(CATA)	국방부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76		비행경계공역(A)	국방부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 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Alert Area	
77		군사작전구역(MOA)	국방부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 Military Operation Area	
78		헬리콥터훈련구역(HTA)	국방부	헬기훈련구역, Helicopter Training Area	